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17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정점식 · 하영제

엄태영 · 추경호 · 한무경

박덕흠 • 박대수 • 이종성

윤두현 • 권성동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·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,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, 작업 보조 공학기기·장비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·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21조, 제23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
- 2.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·장비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, 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기기 또는 장비 등"을 각각 "기기·장비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1조"를 "제18조, 제21조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1조"를 "제18조, 제21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1조제1항"을 "제18조제1항 각 호, 제21조제1항"으로, "제 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"을 "제22조제1항의 목적"으로 한다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

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장애인 근로자 지원) ①	제18조(장애인 근로자 지원) ① -
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	
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	
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<u>있다</u> .	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1.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등에
	소요되는 교통비 지원
<u><신 설></u>	2.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
	<u>작업 보조 공학기기·장비 또</u>
	는 구입에 드는 비용
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	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, 기
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	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
<u>령으로 정한다.</u>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1조(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	제21조(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
한 지원) ① (생 략)	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	2.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
작업 보조 공학 <u>기기 또는 장비</u>	작업 보조 공학 <u>기기·장비 또</u>
<u> </u>	는 구입에 드는 비용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	②
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	
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	

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<u>기기 또는 장비</u>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23조(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지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,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 << 산선 신설>

1. ~ 4. (생 략)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u>기기・장비 또는</u>
<u>구입에 드는 비용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
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) ①
제18조, 제21
<u>조</u>
디마 게1중세 케다쉬
<u>다만, 제1호에 해당하</u>
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
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
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
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제18조,
제21조
1. (현행과 같음)
1. (현정의 崔日/

-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 <u>의 목적</u>에 맞게 집행하지 아 <u>제1항의 목적</u>------니한 경우
-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2. 융자 또는 지원금을 <u>제21조</u> 2. -----<u>제18조</u> <u>제1항</u> 각 호, 같은 조 제2항 <u>제1항 각 호, 제21조제1항</u>----
 - 3. (현행과 같음)
 - ③ ④ (현행과 같음)